

금호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“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” 2~3차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는 금호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활력 고취를 위해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『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』 2~3차년도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11월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(요약)

- 가. 사업목적 :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
나. 지원규모 : 0개사 이내
다. 모집기간 : 2024.11.22.(금) ~ 2024.12.06.(금) 18:00
라. 지원금 : 최대 1,000만원
마. 자격요건

구분	구분	자격요건	
		대상	세부내용
■ 청년창업	3차년도	2023년 1기 2차년도 협약 기업	- 2024년 01월 01일, 04월 01일(협약일 기준)로 금호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2차년도 협약한 청년기업
	2차년도	2024년 1기 협약 기업	- 2024년 05월 01일(협약일 기준)로 금호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협약한 청년기업

※타 창업지원사업(R&D 사업 제외) 협약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은 지원 불가

※심사 요건(자격 및 점수)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

II

지원유형

가. 지원금 및 지원내용

* 단위 : 천원

구분	세부내용		최대 지원금	모집 건수
■ 청년창업	사업화 자금	□ 창업 인프라 : 상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, 제품개발 장비 임대, 홍보, 컨설팅 등 지원	10,000	00건
		□ 특허 출원·등록 : 개발 기술(제품)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 및 등록비 지원		
		□ 시제품제작 :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제품설계비, 소량 양산비 지원		

※ 최초 협약 시작일 이후 영천시 '금호읍'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이전 및 3년 유지

나. 추진일정

사업공고·모집	선정 평가	과제협약체결	과제 수행	모니터링	결과평가위원회
24년 11월~12월	24년 12월	25년 1월	25년 2월 ~25년 11월	25년 9월	25년 12월
신청 및 접수	선정 평가	경북TP ↔기업	세부사업 과제수행	수행현황점검	결과평가

III

지원대상

가. 청년창업

1)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“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” 차년도 선정 기업

※선정 후 협약기간 내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지원받
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됨

2) 청년창업 모집 분야

분 야	대 상 업 종
지식창업	지식 콘텐츠, 마케팅홍보, 디자인, 문화서비스업, 통신판매업, 아이디어 창업 등
6차산업 연계 창업	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와 연계된 서비스업, 제조업, 판매업
일반창업	부가가치가 높은 식당, 카페, 스마트스토어 등 소상공인 창업 등
기술창업	기계, 재료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화학, 섬유, 생명, 식품, 환경, 신재생에너지,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등

다. 사전지원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〈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〉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‘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’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‘재창업 자금지원’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〈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〉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④ 중소벤처기업부 (舊 중기청)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특히, 의성군 안계면, 영덕군 영해면 등 이웃사촌마을사업 기지원받은 청년, 기업, 단체 등 신청 불가. 적발시 보조금 및 이자 환수

⑤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) 포함

*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

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
⑧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(기업)

⑨ 기타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영천시 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⑩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 (기업)

⑪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 신청자

⑫ 협약에 필요한 선급금 보증보험 제출이 불가한 자(기업)

IV
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가. (1차) 사전 검토

- 1) (사전검토) 既개발 및 既지원 1차년도 연계성 여부
- 2)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
- 3) (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)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 자격,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체계, 기술성 및 사업성,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또는 면담(온라인, 유선 등)을 실시할 수 있음

나. (2차) 선정평가

- 1) 사전검토(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) 결과,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, 과제책임자의 전년도 사업결과 발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,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선정
- 2)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,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선정을 진행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“탈락”,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 건수만큼 “최종선정” 함
- 3) “최종선정” 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(과제 포기, 자격 박탈)이 발생시, 70점 이상인 과제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지속함

다. 기타 진행 사항 : 선정된 기업은 협약식, 워크숍, 교육 등 필수 참석

라. 최종 결과평가

- 1) (평가위원회 평가) 수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
※ 평가등급 : 최종 평가위원회 일정은 향후 공지
- 2)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비 “인정” 또는 “환수” (전액 or 일부)
- 3) (평가위원회 재평가)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“평가보류”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 결과 통보 후 3주 이내 수행 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V 기업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가. 모니터링(진도점검)

- 1)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
- 2)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(기업)에 대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실시함
- 3)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모니터링 시 기술·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,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
나.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

- 1) (지원사업 결과물의 귀속)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 소유로 함
- 2) (사후관리) 관리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지원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리기관에서 보고함

VI

사업 운영관리

가. 사업비 구성 : 사업비 구성은 지원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(현금) 포함한 금액으로 함

※ 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지원,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(현금) 이상으로 함
(예시 : 지원금 1,000만원 + 기업부담금 100만원 = 사업비 1,100만원)

※ 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

나. 협약의 체결 및 수행 결과 보고에 따른 지원금 지급

- 1) (협약 준비) 지원기업이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, 수정 사업계획서를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

제출서류
① 사업계획서(최종본)
② 사업비 청구서
③ 주관기관 현물출자확약서(해당시)
④ 사업비 통장사본(기존 사업비 통장 0원 확인 후 재사용 가능)
⑤ 법인인감증명서(해당시)
⑥ 선금보증보험((구)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) :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 별도 제출

- 2) (협약 체결)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체결함

※ 선정된 기업은 협약식 및 워크숍 필수 참석

- 3) (협약 기간)

2차년도 협약일(23년 1기)	⇒	3차년도 협약기간(23년 1기)
2024.01.01.		협약일 ~ 2025.11.30.
2024.04.01.		
1차년도 협약기간(24년 1기)	⇒	2차년도 협약기간(24년 1기)
2024.05.01.		협약일 ~ 2025.11.30.

※ 협약연장을 한 경우도 협약종료 기간 동일(사업수행 개월이 줄어듦)

- 4) (사업비 지급 및 사용) 협약체결 후 사업비 선지급하며, 사업 기간 내 사업비 사용을 완료해야 함(현금인출 불가)
- 5) (수행결과보고서 제출) 지원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 1일 전까지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서 제출함

VII

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4. 11. 22.(금) ~ 2024. 12. 06.(금) 18:00 까지

나. 접수방법

접수처	홈페이지 접수(https://www.gbtp.or.kr)
문의처	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구민정 선임연구원 (☎054-339-3352)

다. 제출서류

1) 청년창업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
필수	① (서식1-1) 지원사업 상세계획서(한컴오피스)	1부
	② (서식2)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	1부
	③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	1부
	④ (서식4)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협약서	1부
	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	1부
	⑥ 사업자등록증	1부
	⑦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(홈텍스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)	1부
	⑧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	1부
	⑨ 최근(2023년) 재무제표 (※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)	1부
해당시	⑩ 공장등록증	1부
	⑪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	1부
	⑫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	1부
	⑬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	1부

※ 참고사항

- 가.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'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나.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
- 다. [사업비=지원금]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·현물을 포함한 금액
 - －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
 - －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%이상을 현금으로 계상,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
 - －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,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
 - －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
 - －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
 - － 협약체결 → 민간부담금 입금(기업) → 사업비(영천시 보조금) 선지급(경북TP→기업)
- 라.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
- 마. [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
- 바. [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]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의 소유로 함
- 사. [사후관리]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